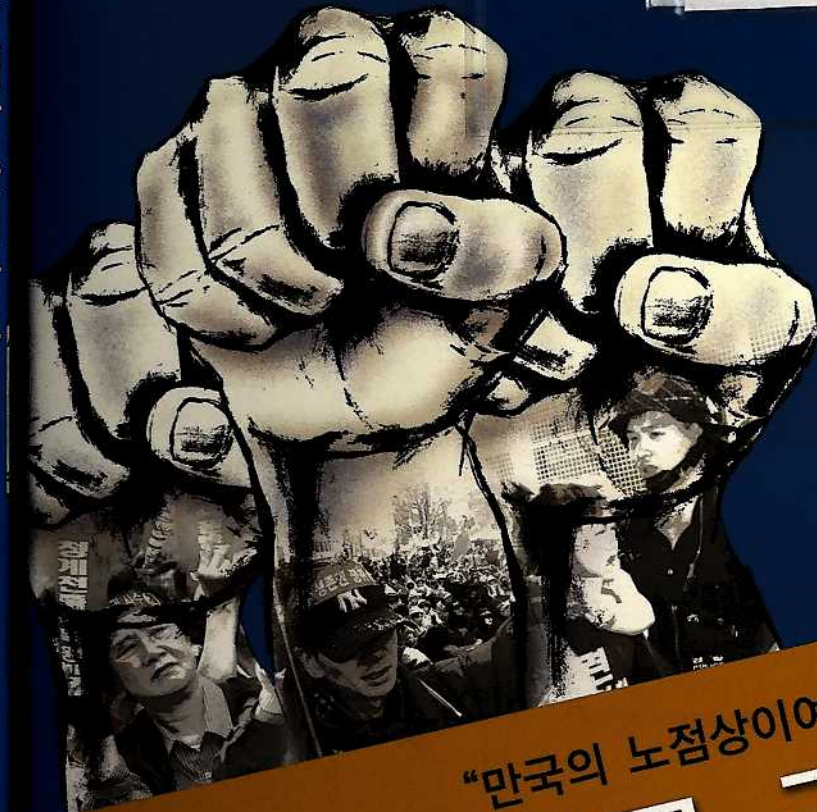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ESg1.25

7호

7호 해방수레를 끌며



전국노점상연합

“만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해방수레를 끌며

ESg1.25

전국노점상연합
www.nojum.org/02-2232-0685

“만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Contents

해방수레를
끌며
7호

5	국제노점상연합 김흥현 의장 인사말
6	국제노점상서울대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10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특별결의문
23	국제노점상연합 규약
67	노점상정책 토론회(Policy Dialogue)
93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평가 및 향후계획
104	인터뷰
110	노점상 생존권 쟁취를 위한 2004 국제 노점상연합 서울대회
119	한국노점상의 현실, 그리고 한국/다른나라정부의 정책
124	보도자료
145	언론보도자료 모음
153	노점상의 벨라지오 국제 선언



국제노점상연합
김 홍 현 의장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 덕분에 첫 번째 국제노점상
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점상들은 단지 공식적으로 인
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노점상'으로 매도
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용역발주와 이
에 의한 상시적 욕설, 성폭력, 살인적인 단속, 그리고
2000년대부터 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과태료 부과와 재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기에 스스로 전국노점상연
합을 만들고 노점해방/빈민해방을 위해 한발짝씩 전진해 왔으며 다른 사회단
체 동지들과 연대하여 민중해방과 민주주의,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
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연대투쟁과 단결력, 투쟁력으로 이번 국제노점상서
울대회를 성사시켰으며 국제노점상연합 첫 의장으로 전노련의 대표인 제가
의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연대를 통해 '노점상도 당당한 노동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기본적인 삶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채 노동하며 살아가
는 사람들이 비공식노동자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길에 항상 함께 합시다. 투쟁!

국제노점상서울대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국제노점상서울대회가 결정되기까지

한국조직위 결성

2004년 2월 10일, 전노련 사무실에서 한국조직위 건설을 위한 공개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2월 20일, 한국조직위 1차 집행위회의가 진행되었고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한국조직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한국조직위 :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자민중회의,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노점진영이 통합을 한 이후 한국조직위를 결성하게 되었지만 각 단체별로 총선투쟁 등을 앞두고 있거나 탄핵국면에 대한 대응투쟁을 하고 있었고 국제

노점상서울대회 한국조직위에서 각 단체들이 진행할 활동들에 대한 논의가 늦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국조직위 내에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위원회, 문화위원회로 각 단체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보다 한국조직위 집행위를 통해 활동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진보연대에서는 1인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대회기간에 함께 하였고 더불어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함께 대회기간에 '비공식부문노동자운동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총은 노점상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였다. 더불어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노점상페스티벌이 열리던 동대문운동장에서 기초생활수급권 상담을 했고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이주노동자투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회 마지막 준비

대회를 1주일 앞둔 3월 8일, 마무리 점검을 하기위해 국제노점상연합 coordinator인 팻 호른과 administrator인 nozipho가 미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들은 한국조직위와 함께 대회 전반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국제대회 참가자 비자발급 문제, 항공일정을 체크하면서 한편으로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에 비자발급 지연문제 관련 항의를 하거나 한국조직위와의 간담회('국제연대운동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일반/동시통역과의 미팅, 서울시 방문, 전노련 회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완료해나갔다.

개막식

3월 16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전노련 주최, 국제노점상연합 주관으로 진행된 개막식은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한국조직위 김인수 집행위원장(전노련 수석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노련 김홍현 공동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국제노점상연합 임시의장인 Churchil Mrasi가 개막식에 참

가하지 않아 개회사는 임시사무총장인 Elvis Chishala가 하였는데 다음 단체들의 지지메시지도 낭독하였다.:

가나노총(Ghana TUC)을 대표하여 Kofi Asamoah
PSI(국제공무원노동자, Public Service International)를 대표하여 Nora Wintour
WIEGO(세계화/조직화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여성)
네덜란드의 위치한 IRENE에서 Anneke Van Luijken Centrale des Syndicats de Secteurs Prive et Informal du Benin (CSPIB)에서 Gratien Hounsinou
기조연설은 백기완 선생님이 하였고 이후 전국민중연대(KPS, Korean People's Solidarity), 민주노총(KCT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전농(Korean Peasant's Union)에서 연대발언을 하였다.

본회의

인도 SEWA, NASVI 참가자들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일정이 조금 수정되었으며 애초 3월 16일 오후, 3월 17일 오전/오후로 진행하기로 했던 회의일정을 3월 16일 오후, 3월 17일 저녁/밤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특별결의문 채택, 규약개정안 채택, 국제 지도부 등 국제위원회 임원 선출 등이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채택된 특별결의문과 규약개정안을 포함한 규약은 뒤에 별첨.)

국제노점상연합 선거결과

의 장 : 전노련 김흥현(남)

부의장 : 인도노점상연합(NASVI) Manali Shah(여)(인도 SEWA의 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인도노점상연합 대표 중 한명으로 이 대회에 참석함)

재정담당(Treasurer) : 남아공 Eastern Cape Alliance of Street Vendors의 Fundile Jalile(남)

사무총장(Secretary) : 잠비아 AZIEA의 Elvis Nkandu Chishala(남)

국제위원회 임원(국제위원) :

케냐 KASVIT의 Teresa Ak'ongo(여)

기니 CNTG의 Fatoumata Bah(여)

베닌 USYNVEPID의 Clarisse Gnahoui(여)

페루 FEDEVAL의 Gloria Solorzano Espinoza(여)

잠비아 AZIEA의 Lameck Kashiwa(남)

가나 Ghana StreetNet Alliance의 Jacob W.K. Otum(남)

인도 NASVI의 Arbind Singh(남)

페루 FEDEVAL의 Manuel Sulca Escalante(남)

적어도 50%이상의 국제위원 성원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규약에 의거하여 여성후보자들은 모두 자동으로 당선되었으며 등록된 여성후보자 수가 부족하여 3명의 국제위원은 우선 공석으로 두고 5월에 진행하는 첫 번째 국제위원회 회의에서 어떻게 할지를 토론타기로 함.(이후 5월 7~8일에 남아공 더반에서 진행된 국제노점상연합 국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나 Ghana StreetNet Alliance, 모잠비크 ASSOTSI, 방글라데시 SEU 여성대표들을 국제위원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함.)

이후 3월 18일에 '노점상정책 토론회(Policy Dialogue)'를 국제노점상연합 주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하였다. 애초 한국 정부, 서울시에 토론회 참가를 제안하고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지만 이들은 결국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노점상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와 발제문은 뒤에 별첨하였다.

3월 19일, 외국 참가자들에게 청계천 노점상투쟁과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노점상들의 정당한 생존권문제를 부각시키고자 '국제노점상 페스티벌'(청계천 동대문운동장에서 진행)을 진행하였다. 행사장 입구에서의 사전행사, 행사장 안에서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캠페인으로 구성하였다.

국제노점상서울대회 특별결의문

이번 국제노점상서울대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통해 채택한 특별결의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For the Development of Promotional Policies for Street Vendors by National States.
1.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진전된 노점상 정책 개발
2. For the Promotion of Informal Women Workers of the World.
2. 세계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진전
3. Loans
3. 재정대여
4. Foreign and migrant street vendors
4. 외국/이주노점상
5. Child labour
5. 아동노동

6. Our fight against harassment and government crack-downs
6. 탄압과 정부의 단속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
7. Street children
7. 거리의 아이들
8. Fund-raising Sub-Committee
8. 재정마련 부속위원회
9. Financial Regulations
9. 재정규칙

Resolution 1 : For the Development of Promotional Policies for Street Vendors by National States.

결의문 1 :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진전된 노점상 정책 개발

1. To promote in each country a statement of requirements and public services and of preferred and adequate location of informal workers in the urban space in the social interest, with reference to the specificities and conditions of its situation.
1. 각 나라에서 그 특수성과 조건에 맞게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여 도시공간에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이고 적절한 매치, 필요사항과 공공 서비스를 증진시킬 것!
2. Encouraging in each country and city the formulation of integral

Programs of promotion of informal workers that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street vendors as citizens and merchants, articulating the economic and social politics that respect these rights, the use of urban space and economic development, etc.

2. 각 나라와 시에서 노점상을 시민, 상인으로 인정하며 그 권리를 주목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공식화를 고무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는 사회경제적 정치학과 도시공간의 사용 및 경제적 발전 등을 분명히 할 것!
3. To fight for the rights of informal workers, claiming their rights to work, welfare and development; to develop strategic alliances with the union movement and other actors in local, national and world development.
3. 일할 권리, 복지와 자기함양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 지역,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조직운동이나 다른 활동가들과의 전략적 연맹을 개발할 것!

Resolution 2 : For the Promotion of Informal Women Workers of the World.

결의문 2 : 세계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들의 진전

1. To promote relations of equality among men and women, encouraging our organizations to focus on learning equitable and democratic practices.
1. 남성과 여성간에 평등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단체들이 공평하고

민주적인 훈련을 배우는데 주력하도록 할 것!

2. To support the presence of the women working in public spaces, operating in the 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capacity of our organizations, and to surpass the traditional role that limits them to subordinate roles.
2. 공공(대중)공간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표하고 우리 단체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종속적 역할을 하도록 제한했던 전통적 역할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Encouraging the active role of women and men in the demand and exercise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workers and citizens.
3. 노동자와 시민들의 조건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훈련의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적극적 역할을 추동할 것!
4. Condemning the use of subcontracted gangsters who perpetrate act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4. 여성들에게 성적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 고용/계약을 못하도록 할 것!

Resolution 3 : Loans

결의문 3 : 재정대여

1. That StreetNet will not attempt to administer any loan schemes,

as this would detract from the central organising and policy work which is the primary focus of StreetNet's work;

1. 국제노점상연합은 대외관련 계획을 담당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것 자체가 국제노점상연합 활동의 중요한 초점인 중앙조직화와 정책 활동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That StreetNet will retain its structure and character as a non-profit organisation as the best structure for attaining the policy and organisational gains which StreetNet seeks to achieve, and for the purposes of continuing to qualify for tax exemptions on donor funds and self-generated income for running the organisation;
2. 국제노점상연합은 국제노점상연합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정책 및 조직적 성과를 달성하는 가장 적합한 조직이며 기금 및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립적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도록 그 조직골간과 특성을 비영리단체로 유지할 것이다.
3. That StreetNet's method of assisting member organisations who need funds will be by helping them to develop their own independent fund-raising capacity, or by putting them in contact with savings and credit organisations in their own countries (where StreetNet knows about such organisations) in order that they may establish working partnerships directly with them.
3. 국제노점상연합이 재정이 필요한 회원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그 단체들이 스스로 독립된 재정마련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그 나라(국제노점상연합이 이런 단체가 있다고 아는 나라)의 저축/신용

단체들과 연결되어 그들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esolution 4 : Foreign and migrant street vendors

결의문 4 : 외국/이주노점상

1. as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mmitted to improving the lives of street vendors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to oppose xenophobia and to discourage member organisations from adopting xenophobic policies or practices in relation to foreign 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1. 세계 모든 나라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조직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거부하고, 회원단체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에 대해 거부하는 정책 혹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to encourage informal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hawkers in different countries to engage voluntarily in trade with each other, and to develop the suitable terms and conditions for such trade to their own advantage;
2. 서로 다른 나라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 노점상과 행상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조건과 상황을 개발하도록 한다.
3. to attend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f the ILO in June 2004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on Migrant Labour with a delegation of participants most accustomed to working

with foreign and migrant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3. 2004년 6월에 진행되는 ILO 국제노동총회에 참석하여 이주노동관련 위원회에 외국/이주노동자,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참가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한다.

4.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on Migrant Labour at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with the objective of gaining recognition in the wording of its Conclusions or other ILO instrument about the situation and problems faced by foreign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in particular.

4. 이주노동관련 위원회에 참가하여 이주노동자,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노동자들이 특히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그 결정사항이나 ILO 기구를 인지한다.

Resolution 5 : Child labour

결의문 5 : 아동노동

1. that StreetNet supports ILO Convention 138 and Recommendation 146 of 1973 on the Minimum Age, and Convention 182 and Recommendation 190 of 1999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 국제노동협약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1973년의 ILO '협약 138과 '권고' 146, '나쁜 형태로서의 아동노동' 과 관련한 1999년의 '협약 182와 '권고' 190을 지지한다.

2. to unconditionally support the rights of all children to attend school, to encourage informal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hawkers to ensure that their children complete their schooling, and to promote opportunities for their further education;

2.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권리와,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 노동자, 행상들의 아이들이 학업을 완료하고 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건없이 지원할 것!

3. to unconditionally support the promotion and exercise of equal rights for girl children, and to fight against any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girl child;

3. 여성이동들이 공평하게 자기발전과 훈련을 할 권리를 조건없이 지원하며 여성아동에 대한 어떤 형태의 차별이든 이에 맞서 투쟁할 것!

4. to work for the increase in incomes for adult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as the best means of eliminating the need for children to work to augment the incomes of adult family members;

4. 아이들이 성인 가족들의 수입을 증가할 목적으로 일해야하는 필요성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성인 노동자,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

5.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ecure and affordable child care centres for pre-school children of street vendors, market vendors or hawkers close to their places of work operating appropriate hours for them to be able to fully utilise such centres. Where

possible, such child-care centres should be integrally linked to town or market plans;

5. 노점상, 재래시장 상인, 혹은 행상의 미취학아동들을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아동보육시설 설립을 증진시키고 노동하는 장소에 가깝고 일하는 동안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동안 운영하게 할 것! 가능하다면, 이러한 아동보육시설은 적절하게 도시/시장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6. to promote urban planning approaches which incorporate facilities for the care of the pre-school children of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6. 노점상,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의 미취학아동들을 보육할 시설들이 법안화되도록 하는 도시 계획 접근들을 증진시킬 것!

Resolution 6 : Our fight against harassment and government crack-downs

결의문 6 : 탄압과 정부의 단속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

1. to fight tirelessly against all forms of harassment of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by initiating and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ampaigns;
1. 세계적으로 노점상,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들의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맞서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

2. in cases where harassment occurs and results in injury or losses, compensation will be demanded;

2. 탄압이 벌어지고 다치거나 손해를 볼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
3. to publicise to the world's population at larg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street vendors, market vendors and hawkers with all forms of harassment, and to draw attention to the gendered nature of harassment experienced by women, who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 poorest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in most countries;
3. 노점상,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형태의 탄압문제들을 세계 대중들에게 알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노점상,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겪고 있는 탄압에 관심을 가지게 할 것!

4. to pressuris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authorities to engage in social dialogue with street vendors, informal market vendors and hawkers and/or their organisations and elected representatives in order to avoid the approach of harassment or engaging in crack-downs.

4. 지방/중앙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하여 노점상, 비공식 재래시장 상인과 행상, 그리고(혹은) 그들의 조직 및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과 사회적 대화를 하게 하여 탄압이나 단속을 피하지 못하게 할 것!

Resolution 7 : Street children

결의문 7 : 거리의 아이들

1. to create public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street vendors and street children;
1. 노점상과 거리의 아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대중적 인식을 확대할 것!
2. to promote preventative programmes to ensure that the children of street vendors do not become street children, by means of:
 - affordable child-care facilities for pre-school children of street vendors;
 - accessible education for children of street vendors;
 - further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otential of the children of street vendors;2. 노점상의 아이들이 거리의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노점상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 노점상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노점상의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획 등의 방법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것!
3. to pressuris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authorities to initiate social programmes for the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otential of children below the age of 15 living on the streets, and their parents.
3. 지방/중앙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하여 거리에서 살고 있는 15세미만의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의 갱생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할 것!

Resolution 8 : Fund-raising Sub-Committee

결의문 8 : 재정마련 부속위원회

1. The Sub-Committee shall report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treetNet on a regular basis;
1. 부속위원회는 국제노점상연합의 국제위원회와 국제대의원대회에 적절한 품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Members of the Sub-Committee will not be entitled to profit or benefit personally from any income-generation projects of Streetnet International;
2. 부속위원회의 임원들은 국제노점상연합 수입창출 프로젝트와 관련 어떤 이득도 챙기지 않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3. Any income which accrues through the work of the sub-committee, including income in the form of commission or shares, shall belong to StreetNet International as an organisation and not to any individual staff or member of StreetNet, including elected office-bearers and members of the Fund-raising Sub-Committee.
3. 수수료나 할당 식의 수입을 포함하여 부속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단체로서 국제노점상연합이 귀속되며 어떤 개별 staff이나 선출된 지도부 및 재정마련 부속위원회 임원을 포함한 국제노점상연합 임원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Resolution 9 : Financial Regulations

결의문 9 : 재정규칙

To adopt the attached financial regulations to guide those in charge of managing StreetNet's financial resources.

국제노점상연합의 재정에 대한 가이드가 되도록 재정규칙 채택!

국제노점상 연합규약



“만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국제노점상연합규약
CONSTITUTION OF STREETNET INTERNATIONAL
('StreetNet')

1. NAME

1. 명칭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shall be StreetNet International.
본 조직의 명칭을 'StreetNet International' (국제노점상연합)이라 한다.

2. SCOPE

2. 범위

2.1. StreetNet shall be open to the following types of organizations:

2.1. 본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직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2.1.1. National alliances of membership-based organisation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or hawkers such as unions, co-operatives, and any other type of associations;

2.1.1.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연합체, 협동조합 그리고 다른 어떠한

형태의 조직과 같은 조직에 기초한 국가연합조직

2.1.2. Regional alliances of membership-based organisation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or hawkers such as unions, co-operatives, and any other type of associations;

2.1.2.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연합체, 협동조합 그리고 다른 어떠한 형태의 조직과 같은 조직에 기초한 지역연합조직

2.1.3. City-based alliances of membership-based organisation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or hawkers such as unions, co-operatives, and any other type of associations;

2.1.3.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연합체, 협동조합 그리고 다른 어떠한 형태의 조직과 같은 조직에 기초한 도시별 조직

2.1.4. National trade unions organising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or hawkers among their members.

2.1.4.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끼리의 소속원들로 구성된 국가무역기구

2.2. Where StreetNet has more than one member organisation from the same country, region or city, such member organisations will be encouraged to merge with each other where appropriate, in order to work towards one united alliance per country.

2.2. 본 조직은 같은 국가, 지역, 도시에 하나 이상의 회원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이들 회원 조직은 국가별 하나의 연합조직을 지향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끼리 서로 통합되기를 지지받을 것이다.

2.3. Individual membership-based organization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or hawkers wanting to join StreetNet will be encouraged and/or assisted to group together with other similar organisations into national alliances or city alliances which can affiliate directly to StreetNet.

2.3. 본 조직에 가입을 원하는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개별조직들은 본 조직에 직접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함께할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도시 조직에 함께 하도록 지지, 지원 받을 것이다.

3. AIMS AND OBJECTS

3. 목표와 목적

The aims and objects of StreetNet shall be:

본 조직의 목표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3.1. to expand and strengthen market and street vendor network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3.1. 국제, 국가, 지역별 수준에서 시장 또는 노점상인들의 네트워크(조직)를 확장 확대한다.

3.2. to build and strengthen the capacity and leadership of women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at all levels of organization;

3.2. 모든 수준의 조직에서 여성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의 수용력과 리더십을 건설, 확장한다.

3.3. to build an information base on the numbers and situation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disaggregated by gender;

3.3. 세계 각지의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의 성별 수와 상황에 기초한 정보수집체계 구축.

3.4. to document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effective organising strategies for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3.4.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의 권리를 촉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 조직정책 정보를 문서화하고 보급한다.

3.5. in recognition of the class differences which exist between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StreetNet should prioritise the upliftment of the poorest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3.5.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차이를 인지하고, 가장 빈곤한 저소득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의 이익에 우선권을 둔다.

3.6. to prioritise the interests of low-income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StreetNet should focus on stopping exploitation of such vendors by high-income vendors, intermediaries and wholesalers;

3.6. 저소득 시장 상인, 노점상, 행상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본 조직은 고소득 상인, 중개인 및 모든 상인의 착취를 중단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3.7. to bring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into

the mainstream of policies and laws which affect their livelihoods, such as urban policies;

3.7. 도시 정책과 같이 그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법에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이 포함되게 한다.

3.8. to represent street vendors, mark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in the international arena;

3.8. 국제 무대에서 노점상, 시장상인, 행상을 대표(상징) 한다.

3.9. to help StreetNet member organizations to represent street vendors, mark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3.9. 국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을 대표하기 위한 본 조직의 회원조직을 돕는다.

3.10. to take forward the Bellagio Declaration;

3.10. 벨라지오 선언을 준수한다.

3.11. members should gain an understanding of common problem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develop new ideas for strengthening their organising and advocacy efforts, and join in international campaigns to promote policies and action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ives and opportunities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 mobile hawkers;

3.11. 회원조직은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고, 그들의 조직강화와 지지(옹호) 노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

시키며,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생존과 기회 확대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정책 및 행동 촉진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한다.

3.12. to work 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federations and centres of trade unions;

3.12. 국제 연맹과 노동조합들과 우대관계를 갖는다.

3.13. to work in social partnership with NGO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o work with and in support of market vendors, street vendors and/or mobile hawkers and who support the goals and constitution of StreetNet.

3.13.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지원을 위해 일하며 본 조직의 목적과 규약을 지지하는 NGO, 대학과 연구기관과 사회적 우대관계를 갖는다.

4. INTERNATIONAL OFFICE

4. 국제사무실

The international office of StreetNet shall be located in Durban, South Africa, or at such place as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determine from time to time.

본 조직의 국제사무실은 남아공의 더반 혹은 시기별로 국제 대의원대회가 결정하는 장소로 한다.

5. MEMBERSHIP

5. 회원자격

5.1. All organisations as envisaged in Clause 2 above shall be eligible for membership of StreetNet.

5.1. 조항 2에서 미리 언급한 모든 조직은 본 조직의 회원으로 적격한 조직이다.

5.2. The number of votes of a member organisa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ased on the number of paid-up market vendor, street vendor and/or hawker members belonging to the organization or its affiliates (paid-up according to the practices and policies of the respective organizations).

5.2. 회원조직의 투표권 수는 그 조직 혹은 가입조직의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시장상인, 노점상, 행상인들의 수에 기초해 비례대표 대의원으로 결정된다.(각 조직의 실행과 정책에 의거한 회비 납부)

5.3. Application for admission or re-admission to membership shall be lodged in writing on a prescribed form with the International Council, which shall have authority to accept or refuse any application for any reason deemed to be necessary.

5.3. 회원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청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서류에 대해 승인 혹은 거부권을 가진 국제 회의에 권장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5.4. An organisation which has disaffiliated or been suspended or expelled from StreetNet but which is still engaged in the interests set forth in Clause 2 may be re-admitted to membership on such conditions as the International Council may determine.

5.4.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 조직으로부터 보류 혹은 제명당했지만 조항 2의 규정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조직은 국제회의에서의 결정과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5.5. An organisation to whom admission to membership is refused shall be entitled to a refund of any monies paid by the organisation on application.

5.5. 가입을 거부당한 조직은 조직 가입 절차상의 어떤 비용이든 상환받을 수 있다.

5.6. Every organisation shall notify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its address and contact details and changes thereto, within fourteen days on which the change took place.

5.6. 모든 조직은 국제 코디네이터에게 조직의 주소와 세부사항을 통보하고, 변동사항이 있을시 14일 내에 변경한다.

6. TERMINATION OF MEMBERSHIP

6. 자격의 정지(종료)

6.1. A member organization may resign by giving four (4) weeks notice to the International Secretary or Co-ordinator, which shall be committed to writing.

6.1. 회원조직은 국제 비서 혹은 코디네이터에게 서류를 넘겨 공지한 후 4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이 정지된다.

6.2. A member organization may be suspended or expelled, according

to due process, by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Council for acting against the aims and objects of StreetNet, but this should be endorsed later by the International Congress.

6.2. 회원조직은 본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대항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제회의의 결정에 의해 보류 혹은 제명된다. 하지만 이는 추후 국제대회에서 승인된다.

6.3. A member organization which has been expelled from StreetNet shall not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affairs of StreetNet and shall have no claim to any benefits provided by StreetNet. Such organization shall further have no claim on the general funds of StreetNet nor be entitled to a refund of any monies or affiliation fees paid to StreetNet.

6.3. 본 조직으로부터 제명된 조직은 본 조직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며 본 조직으로부터 부여된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도 요구권이 없다. 이러한 조직은 나아가 본 조직의 일반 자금에 대한 요구권이 없을뿐더러 본 조직에 납부한 가입비 혹은 어떤 기금도 상환 받을 권리가 없다.

6.4.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this Constitution, any member organization whose situation changes to the extent that it no longer falls under StreetNet's scope as defined in Clause 2, shall relinquish membership of StreetNet and shall forfeit any entitlement to benefits provided by StreetNet.

6.4. 이 규약을 포함하는 정반대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본 조직의 조항 2에서 규정한 범위보다 떨어지지 않는 범위를 변경할 상황의 어떤 회원 조직은, 본 조직의 회원자격을 포기하고 SN으로부터 부여된 이익의 획득

특권을 상실한다.

7. AFFILIATION FEES

7. 가입비

7.1. All members shall pay an affiliation fee on joining StreetNet and annual fees thereafter. The amounts of this joining fee and these annual fees to be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y two-thirds majority ballo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7.1. 본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 조직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가입비와 연회비는 시기별로 국제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7.2. Any member who falls behind in respect of two (2) years' annual fees shall not be in good standing as a member of StreetNet, and their membership will be regarded as having lapsed.

7.2. 연회비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회원 조직은 본 조직의 정회원 자격이 없으며 그들의 멤버십(회원으로서의 권한)은 상실된다.

8. ORGANISATIONAL STRUCTURES

8. 조직구성

StreetNet consists of the following structures:

본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직구성을 갖는다.

International Congress: meets at least once every three years,

consisting of representation by delegates from International Council and all member organisations, based on membership size.

국제대회 : 매 3년에 한번 개최되며, 국제회의로부터 임명된 대표와 조직 규모에 기초한 모든 회원 조직들로 구성된다.

International Council: meets annually, consisting of representation by eleven (11) elected members in addition to the International President, Vice-President, Secretary and Treasurer, of whom at least (50%) must be women.

국제회의 : 매년 개최되며, 50%이상 여성 할당된 국제의장, 부의장, 비서, 감사를 포함해 선출된 11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Executive Committee: a sub-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consisting of seven, which meets quarterly.

집행위원회 : 7명으로 구성된 국제회의의 소위원회로 분기별로 개최된다.

9. INTERNATIONAL CONGRESS

9. 국제대회

The supreme governing body of StreetNet shall be the International Congress.

본 조직의 최고결정기구가 국제대회이다.

9.1. Composition

9.1. 구성

(a) The International Congress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delegates:

(a) 국제대회는 다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i)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i) 국제회의의 성원

(ii) delegates elected by each member organization which shall be entitled to the following number of delegates based on the number of paid-up members the organization (and its affiliates, where applicable) represents:

(ii) 다음과 같은 회비납부회원 수에 기초해 정해진 대표들을 포함한 각 조직 (가입된, 적용된)의 선출대표

회원수 대표

0 - 1,000 members: 1 delegate

(대표 1명)

1,001 - 10,000 members: 3 delegates (at least 1 woman)

대표 3명(여성이 최소 1인)

10,001 - 50,000 members: 5 delegates (at least 2 women)

대표 5명(여성이 최소 2인)

50,001 members or more: 10 delegates (at least 5 women)

대표 10명(여성이 최소 5인)

(iii) Only those delegates present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will have a vote, on the basis of one vote per delegate present.

(iii) 위와 같은 조건의 대표만이 1인당 1표씩의 투표권을 가진다.

- (b) The number of delegates per member organisation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Clause 9.1(a) above, and their credentials approved, by decis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prior to an International Congress. Only delegates whose credentials have been so approved shall be entitled to vote at an International Congress.
- (b) 회원 조직당 대의원(대표)수는 조항 9.1.(a) 규정에 따라 고정되고, 그들의 신임장은 총회에 앞서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인된다. 신임장을 가진 대표만이 국제 총회에서 투표권이 승인된다.

9.2. Meetings

9.2. 회의

- (a)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shall ordinarily meet at least once every three years on a date fix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Speci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may be called by decis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 (a) 국제대회는 국제회의에서 정해진 날짜에 최소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국제대회의 특별회의(임시총회)는 국제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개최된다.
- (b) Members shall be invited in writing and informed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by the Secretary and/or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at least ninety (9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provided that shorter notice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be given in respect of Special International Congresses.

- (b) 회원조직은 국제대회가 개최되기 최소(90)일 전에 비서나 코디네이터에게 국제대회의 시간과 장소가 기재된 서면 초청을 받을 것이며, 만약 국제회의가 개최될 경우는 국제회의의 재량껏 공지시한이 더 짧아질 수 있다.

- (c) The busines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shall be:

- (c) 국제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i) to consider and decide on reports presented;
- (i) 제출되는 문서(보고서)의 고려 및 결정;
- (ii) to formulate policy for StreetNet and decide on resolutions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by members an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 (ii) 본 조직을 위한 정책을 공식화하고 회원조직과 국제회의에 의해 국제대회에 제출된 결의를 결정한다
- (iii) to consider and approve amendments to StreetNet's Constitution;
- (iii) 본 조직의 규약 변경의 숙고 및 승인
- (iv) to review and decide on the financial position and progress of StreetNet;
- (iv) 본 조직의 재정상태와 개선에 대한 재검토 및 결정
- (v) to deal with any matter which in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is in StreetNet's interest and which merits the consideration of the Congress, including establishing working groups and sub-committees (which would report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to work on particular issues of relevance and interest to members of StreetNet;
- (v) 국제대회에서 본 조직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국제대회 고려시 적

합한 사안 처리. 이에는 본 조직 회원들에게 적절하고 이해에 맞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활동 그룹과 하위 회의를 세우는 것 등도 포함된다.(이러한 것들은 국제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vi) to formulate strategic plans.

(vi) 정책적 계획의 확정 및 공표(공식화)

9.3. Quorum

9.3. 정족수

The quorum for International Congresses shall be 50% + 1 of the total number of delegates who have completed all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on in the International Congress. If within twenty-four (24) hours of the time fixed for an International Congress, a quorum is not present, the Congress shall stand adjourned to such place and time as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decide.

국제대회 정족수는 국제대회의 대표자격을 위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대표자들의 총인원의 과반수(50%+1명)이다. 만약 확정된 국제대회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족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총회는 국제회의가 결정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연기되어 개최될 것이다.

9.4. Election of office-bearers

9.4. 임원 선출

9.4.1. Ordinary International Congresses shall elect from their member organizations an International President, Vice-President, Treasurer and Secretary, whose terms of office shall,

subject to Clause 9.10 below, expire upon election of the succeeding incumbents to office at every ordinary International Congress. Incumbents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up to three terms.

9.4.1. 정기 국제대회에서는 그들의 회원조직들로부터의 의장, 부의장, 회계 감사, 비서를 선출한다. 규약 9.10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의 임기는 매 정기 국제대회에서 계속되는 선거를 통해 만료된다. 재직자는 3번의 재선출 피선거권이 있다.....

9.4.2. Two or more of the four International office-bearers elected must be women.

9.4.2. 4명의 임원 중 두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9.4.3. The four International office-bearers elected may not all come from the same region. No two International office-bearers may come from the same member organization.

9.4.3. 4명의 임원은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는 안되며, 두명의 임원이 같은 조직으로부터 나와서는 안된다.

9.4.4. A nominated candidate may be elected in absentia. Elections shall be by secret ballot except that if no more than the required number of nominations is received, the candidates so nominated shall be declared duly elected without a ballot being taken.

9.4.4. 추천된 후보자는 부재시에 선출된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하되, 단 추천후보자수가 원래 필요한(요구되는) 수보다 많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이럴 경우 후보자들은 투표절차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9.4.5. In the event that no candidate receives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further rounds of balloting shall be held until one candidate receives a majority of the ballots cast. In each round of balloting the candidate who received the least votes shall be eliminated from the next round of balloting. The results of each round of balloting shall be disclosed to the Congress before the following round is commenced.

9.4.5.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을 때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각 투표 회차 마다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다음차 투표에서 제외된다. 각 투표의 결과는 다음차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한다.

9.5. International President

9.5. 국제의장

The President shall preside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Congress, International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at which (s)he is present, enforce observance of this Constitution, sign minutes of such meetings after confirmation thereof and generally exercise supervision of the affairs of the Alliance between such meetings and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by custom and usage pertain to the office.

국제의장은 국제대회, 국제회의, 집행위를 참석 관장하고, 이 규약의 준수를 강제하며 (회의)결정이 있는 후 해당 회의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일상적 사무 업무 사항들과 같이 회의와 집행에 대한 사항 등 본 조직의 업무를 관장한다.

9.6. International Vice-President

9.6. 국제 부의장

In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shall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President.

의장의 부재시 부의장이 의장의 권한을 수행한다.

9.7. International Secretary

9.7. 국제비서

The Secretary shall receive requests for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prepare agendas for meetings in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 S/he should als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a register of members is maintained, all correspondence of StreetNet is properly conducted, minutes of the proceedings of all meetings are recorded, and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be custom and usage pertain to the office.

비서는 국제회의 소집 요청을 받고 의장과 협의 하에 회의와 관련한 사항들을 준비한다. 그/그녀는 또한 의원들의 정족수가 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본 조직에 맞게 집행되고 모든 회의들의 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들이 기록되도록 해야한다. 사무실 운영 관례와 사용 같은 다른 업무들이 집행되도록 해야한다.

9.8. International Treasurer

9.8. 국제 회계감사

The Treasurer shall generally exercise supervision over the financial

affairs of StreetNet,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proper books of account of StreetNet are kept, to have such books audited and to prepare consolidated annual balance sheets and statements of income and expenditure, to submit or make available such information to members and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by custom and usage pertain to the office.

회계감사는 본 조직의 재정 업무에 대해 감독하며 본 조직의 재무 목록이 적절히 보관되고 감사받으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록과 서술이 매년 균형을 맞추도록 준비하며 회원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사무실의 운영이 그렇듯이 제출되거나 적절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9.9. International Co-ordinator

9.9. 국제 코디네이터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will be engaged by and accountable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purposes of management, and have the following duties:

국제 코디네이터는 관리/경영 업무를 위해 국제회의에서 임명되고 책임을 부여받으며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

9.9.1. to receive requests for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to issue notices of such meetings in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to conduct all correspondence of StreetNet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to keep originals of letters received, copies of those despatched and at eac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to table such correspondence as has ensued since the previous meetings; to attend al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International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and record minutes of the proceedings; to ensure the issuing of official receipts for all monies received by StreetNet; to prepare and present a half-yearly financial report to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to ensure that a register of members is maintained; to enter into lease and other agreements on behalf of StreetNet and to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are imposed by the Constitution or as the International Council or Executive Committee may direct. S/he shall attend al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International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but shall have no voting powers at such meetings.

9.9.1. 국제회의의 회의요청을 받고, 의장과 비서와 협의 하에 이러한 회의를 알리며 비서와 함께 본 조직과 상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집행하며 받은 편지의 원본, 복사물을 보관하고 국제회의와 집행위원회의 때 마다 이전 회의 이후의 정리된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고 모든 국제대회, 국제회의,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진행되는 구체적 사항들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본 조직이 받은 모든 재정들에 대한 공식 영수증을 확실히 하며 국제회의와 집행위원회의에 1/4분기의 재정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to enter into lease and other agreements on behalf of StreetNet and to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are imposed by the Constitution or as the International Council or Executive Committee may direct하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모든 국제대회, 국제회의, 집행위 회의에 참가하며

해당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는 않는다.

9.9.2. to take all necessary steps, in consultation with the Treasurer, to ensure that proper books of account of StreetNet are kept, to have such books audited, and to prepare a consolidated annual balance sheet and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diture, and to submit or make available such information to the office-bearers and members.

9.9.2. 회계감사와 협의 하에 필요한 단계를 밟으며 본 조직의 장부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고 이 장부들이 감사를 받게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매년 균형이 잡히도록 하고 실무자들과 회원들에게 제출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9.9.3. to encourage and assist organizations with mergers, and to carry out activities of StreetNet as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9.9.3. 조직들이 하나가 되록 고무하거나 도우며 국제대회와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바대로 본 조직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9.9.4.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may resign on giving two (2) months' notice in writing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her/his services may be terminated on a similar period of notice being given to her/him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a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within two months,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exercise the power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but it is to be endorsed later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S/he may be summarily discharg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r Executive Committee for a serious neglect of duty or misconduct. In the event of the office becoming vacant,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appoint a new incumbent.

9.9.4. 국제 코디네이터는 국제회의에 2달간 고시하고 사직하며 같은 기간동안 국제회의가 본인에게 고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 만약 국제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으면 집행위회의가 국제회의를 대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후 국제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녀는 국제회의나 집행위회의를 통해 심각한 태만/태업/남용과 관련하여 즉결 해임될 수 있다. 사무실이 비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가 새로운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9.10. Removal from office of Office-Bearers

9.10. 사무실 실무자의 해임

The International President, Vice-President, Secretary and Treasurer shall vacate office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국제 의장, 부의장, 비서와 회계감사는 아래의 상황일 때 해임된다.:

9.10.1. on resignation, suspension or expulsion from membership of StreetNet or any of its member organizations, or on suspension or expulsion from office for misconduct on a two-thirds majorit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9.10.1. 본 조직 회원들 혹은 회원단체들에 의해 해임, 정지, 제명되었거나 남용으로 인해 국제회의 2/3이상의 결정에 의거 사무실에서 정지, 제명되었을 때

9.10.2. on absenting her/himself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rom three (3) consecutive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9.10.2. 국제회의의 동의 없이 3번 연속 국제회의에 결석하였을 때

9.11. Provisional Office-Bearers

9.11. 임시 사무실 실무자

9.11.1. In the event the office of an International Office-Bearer becomes vacant in between International Congresses,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elect, by ballot, by two-thirds majority vot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 person in an acting capacity until the next ordinary International Congress.

9.11.1. 국제대회 이후 다음 국제대회 있기까지 국제 사무실 실무자가 될 경우 다음 정기 국제대회 때까지 국제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와 2/3이상의 투표에 의해 국제회의 임원들 중 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선출한다.

9.11.2. A member elected to fill such vacancy shall hold office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period of office of her/his predecessor.

9.11.2. 이러한 빈 자리를 담당하기 위해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의 활동을 담당한다.

9.11.3. All such elections shall be on nomination proposed, seconded and voted on by majority ballot.

9.11.3. 이러한 모든 선출은 제안되고 재청되고 다수가 투표한 것에 따른다.

10. INTERNATIONAL COUNCIL

10. 국제회의

Management of StreetNet shall be vested in the International Council between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es.

본 조직의 운영권한은 국제대회 사이에 국제회의에서 부여된다.

10.1. Composition

10.1. 구성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consist of an International President, Vice-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and delegates and alternates as follows:

국제회의는 국제의장, 부의장, 비서, 회계감사 그리고 다음의 지명대표(대의원)로 구성된다.

(a) Eleven (11) representatives elected from among member organisations (as envisaged in Clause 2 above) at the National Congress, of whom at least six (6) shall be women.

(a) 각 조직의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11인. 그 중 최소 6명은 여성

(b) In the event of principal delegates being permanently or temporarily unavailable to attend meetings of the Executive Council, alternates from the elected organisations will be

recognised provided that they are elected and presented to the Executive Council by the organisation concerned.

(b) 대표가 일시적으로 혹은 계속 중역회의(집행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도 인정된다.

(c) Delegates (and alternates) shall, subject to Clause 10.2, hold office for three years and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on termination of their period of office.

(c) 대표단은 10.2. 조항에 의거 3년 동안 사무를 관장하고 임기가 끝나면 재 선출될 수 있다.

(d) International Council members must declare any conflict of interest in regard to being a funding recipient, on a salary or payment, or having a relationship with a national government or any political party that may cause them to influence or have a negative effect on another StreetNet member or an organisational decision. Failure to declare a conflict of interest may result in suspension of membership, right to attend meetings and/or vote on issues.

(d) 국제회의의 대의원은 다른 회원이나 조직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나 정당으로부터 받는 자금, 급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회의 참석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표결도 제한받을 수 있다.

10.2.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vacate her/his seat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0.2. 국제회의의 대의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한을 양도한다.:

(a) on resignation, suspension or expulsion of him/herself or her/his member organisation from membership of StreetNet;

(a) 해당 자가 속한 조직이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

(b) on absenting him/herself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rom three (3) consecutive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b) 국제회의에 사전 허가 없이 3회 연속 불참하는 경우

(c) on the member organisation of which s/he is a member ceasing to be a member in good standing.

(c) 그가 속한 조직이 국제회의의 대의원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10.3.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ordinarily meet at least once every year on a date to be fixed by the President in conjunction with the Secretary and International Co-ordinator insofar as this is possible. Special meetings (physical meetings or teleconference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henever s/he deems it advisable or by a requisition signed by not less than eight (8) of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in which event the meeting shall be called within one (1) month of the receipt of the requisition by the President.

10.3. 국제회의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한 비서와 다른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정한 날짜에 연 1회 모인다. 특별회의(한 자리에 모인 회의 혹은 원격회의 등)가 의장에 의해 1달 전에 소집되거나 회원조직대표 8

명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될 수 있다.

10.4.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s by the Secretary or International Co-ordinator at least one (1) month before the dates of such meetings, provided that shorter notice being not less than seven (7) days' notice may in the discretion of the President be given in respect of extraordinary meetings. The Agenda of the meeting shall be attached to the notice of the meeting, failing which it shall be circulated to delegates in writing not less than two (2) weeks before the meeting, except in case of an extraordinary meeting.

10.4. 의장의 판단에 따라 '7일~한달' 전에 특별회의가 소집될 경우 비서와 국제대회 집행부는 대의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통보에 첨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2주 전 까지 회원 대표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10.5. The quorum for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be 50% + 1 (i.e. 8 members). If within twenty-four (24) hours of the time fixed for any meeting a quorum is not present, the meeting shall stand adjourned indefinitely and may be resumed only after due notice has been given to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10.5. 국제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8명이상)으로 한다. 24시간 이내에 정족수가 모이지 않는 경우, 다른 대의원들에게 모두 통보될 때까지 대의원대회는 연기된다.

10.6. Powers and duties

10.6. 권한과 의무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have the power:

본 규약에 의하여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a) to plan, authorise and monitor activities of StreetNet;

(a) 본 조직의 활동을 계획, 관장, 감시할 수 있다.

(b) to authorise and ensure direct representation of StreetNet members at international forums;

(b) 국제 포럼들에 본조직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다.

(c) to engage and dismiss,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onstitution, any employees of StreetNet,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to fix their remuneration and to define their duties;

(c) 국제회의는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가진다. 단, 이 규약에서 언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조직의 어떤 회원이든 간에, 국제 간사를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책임을 정한다.

(d) to appoint from time to time such sub-committees as it may deem necessary or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 any matter referred to such sub-committee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d) 국제회의는 때때로 필요하거나 감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국제회의에 의해 소집된 소위원회에 어느 사안이든 보고가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 to institute or defend legal proceedings by or on behalf of or against StreetNet or individual member organisations in relation to their work or in furtherance of any of the objects set out in Clause 3 provided same is not inconsistent with any matter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Constitution.

(e) 국제회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할 수 있다.(다음 나열되는 조건에 의해서)

본 조직을 위하거나 해하거나(상반되거나), 그들 활동에 관계된 개인 회원 단체에 의하거나 3조에 의해서나, 어떤 목적의 증진을 위해서거나, (이 규약에서 명확히 한 어떤 사안에 규합되지 않는 목적).

(f) to invest assets of StreetNet and to acquire by purchase, lease or otherwise, any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to hold same on behalf of StreetNet and to sell, let, mortgage or otherwise deal with or dispose of any movable or immovable belongings of StreetNet, provided that no immovable property shall be acquired or sold, nor shall it be mortgaged, let or leased for a period of longer than five (5) years unless six (6) weeks of notice of intention to do this has been given to each member organisation. If during this period any member or region objects, the matter has to be determined by a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where a two-thirds (2/3) majority vote will be required to ratify the proposed action:

(f) 본 조직의 자산을 투자하거나 물건, 차용 혹은 그 외 방법으로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본 조직을 대표하고 본 조직의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소유물을 팔거나 허용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루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자산들도 취득할 수 없거나 팔릴 수 없을 때, 혹은 저당잡힐 수 없고 5년이상 허용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각 회원 단체들에게 이 사용목적을 6주간 고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만약 이 기간동안 어떤 회원이나 지역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국제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 자리에서 2/3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한다.;

(g) to open and operate banking accounts in the name of StreetNet, and to appoint auditors to complete financial audits in terms of 11.5 below;

(g) 본 조직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 11.5 하에 의거 재정 감사를 통과시키는데 동의할 수 있다.

(h) to initiate, authorise and undertake activities which lead to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StreetNet;

(h) 본 조직의 재정적 자급자족을 이루도록 개시, 관장, 집행할 수 있다.

(i) to establish regional offices and regional secretariat structures of StreetNet in order to facilitate greater co-operation between member organizations in any region (and to close down such offices and secretariat structures) and to define the areas of jurisdiction of regional offices;

(i) 어느 대륙이든간에 회원 단체들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륙별 사무실

을 설립하고 본 조직의 대륙별 사무실을 세울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사무실과 사무국을 달을 수 있다) 더불어 대륙 사무실들의 관할 영역을 규정할 수 있다.

(j) to convene when deemed necessary, a Special International Congress, which shall perform such functions and duties as may be referred to it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j)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특별 국제대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회의에 의해 규정된 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k) to appoint from among the members and staff of StreetNet those authorised to sign agreements on behalf of StreetNet. Such authority shall be restricted to those aforementioned persons;

(k) 회원들과 본 조직의 임원들을 통해 본 조직을 대표해서 협정에 사인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전술한 사람들에 국한된다.

(l) to establish and fund projects an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ims and objects of StreetNet;

(l) 본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계획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m) to approve the annu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 and balance sheets of StreetNet;

(m) 매해 재정감사 결과 및 본 조직의 장부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n) to decide on matters of procedure on which this Constitution is

silent;

(n) 본 규약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o) to do such things as may in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ppear to be in the interests of StreetNet and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objects or any matter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Constitution.

(o) 국제회의의 의견에 의거 이러한 사항들을 함에 있어서 본 조직의 이해에 맞게 하며 혹은 본 규약에 불일치하는 것에 대응한다.

10.7. Executive Committee

10.7. 집행위원회

(a)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an implement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consisting of the following:

(a) 집행위원회는 아래 사람들로 구성되며 국제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President

Vice-President

Treasurer

Secretary

Co-ordinator (ex-officio with no vote)

two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ppointed for the purpose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with due regard to minimising the costs of convening meetings of the Executive Committee.

의장, 부의장, 회계감사, 비서, (투표권이 없이 직권을 가진)코디네이터와 집행위 소집 비용을 최소화하고 본 목적을 위해 국제회의에서 동의한 국제회의 소속 2명의 대의원

(b)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meet quarterly in order to consider the following:

(b) 집행위는 아래를 다루기 위해 1년에 4번 회의를 가진다.

(i) financial statements;

(i) 재정적 서술;

(ii) correspondence;

(ii) 통신

(iii) review strategic plans;

(iii) 전략계획 재검토

(iv) other pressing and urgent matter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the Alliance, between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iv) 그 외에 국제회의의 간에 본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출판과 긴급한 사안

(c)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wi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r the International Congress.

(c) 집행위 결정사항과 권고사항들은 국제회의나 국제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FINANCE

11. 재정

11.1. Accounts

11.1. 계좌

(a) All fees from member organisations shall be remitted to the Co-ordinator on behalf of the Treasurer, and shall be deposited within fourteen (14) days of receipt at a bank decided on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This bank account shall be called the StreetNet International Account.

(a) 회원 단체들의 모든 회비는 회계감사를 경유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위탁되며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은행에서 14일 이내에 영수증을 받고 입금된다. 이 은행 계좌는 국제노점상연합 계좌로 호명될 것이다.

(b) All donations to StreetNet shall be remitted to the Co-ordinator on behalf of the Treasurer, and shall be deposited within seven (7) days of receipt at a bank decided on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This bank account shall be called the Donations Account.

(b) 본 조직에 대한 모든 기부금은 회계감사를 경유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위임되며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은행에서 7일 이내에 영수증을 받고 입금된다. 이 은행 계좌는 국제노점상연합 기부금 계좌로 호명될 것이다.

(c) Funds allocated from the StreetNet International or Donations Accounts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any office of StreetNet shall be deposited to its credit at a bank decid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Such account shall be called an Office Account.

(c) 본 조직의 어떤 사무실의 은행을 위해 국제노점상연합 계좌 혹은 기부금 계좌로 할당된 기금도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은행의 credit으로 입금될 것이다. 이러한 계좌는 사무실 계좌로 호명될 것이다.

(d) The signatories of the accounts of StreetNet shall be the International President, Treasurer, Co-ordinator and two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ppointed for the purpose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any two of whom shall jointly sign each transaction.

(d) 본 조직 계좌의 사인은 국제 의장, 회계감사, 코디네이터, 그리고 국제회의에서 이를 위해 동의를 얻은 2명의 국제회의 임원(2명 모두 함께 사인처리)의 그것이 될 것이다.

11.2. Regional finances

11.2. 대륙별 재정

11.2.1. Regional offices of StreetNet shall manage their own fundraising and finances. However, funds raised by StreetNet for such regional offices shall be managed by means of written contracts to be determin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signed between designated representative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the recognised regional secretariat structures.

11.2.1. 본 조직의 대륙별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기금과 재정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륙별 사무실을 위해 본 조직이 모은 기금은 국제회의

에서 결정된 서면 계약에 의거할 것이며 국제회의 대표들과 인정된 대륙별 사무국에 의해 사인될 것이다.

11.2.2. Regional offices shall be required to have their accounts audited annually, and to make their audited reports available to StreetNet.

11.2.2. 대륙별 사무실은 계좌에 대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보고서를 본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11.2.3. If any regional office of StreetNet is disestablished while still holding funds from StreetNet, such funds shall devolve back to StreetNet.

11.2.3. 만약 본 조직의 어느 대륙별 사무소라도 본 조직의 기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된다면 해당 기금은 본 조직으로 도로 귀속될 것이다.

11.3. The funds of all accounts of StreetNet shall be applied to the payment of expenses connec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affairs of StreetNet, the acquisition of property and/or towards the attainment of the objects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Constitution and such other lawful purposes as may be decided upon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r by the member organisations of StreetNet voting by ballot.

11.3. 본 조직의 모든 계좌의 기금은 본 조직의 업무와 관련한 운영, 자산의 구입, 그리고(혹은) 규약의 조항 3항에 명시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국제회의 혹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본조직의 회원단체들에서 결정된 법적 목적을 위해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11.4. Statements of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financial position of StreetNet are to be prepared half-yearly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and submitted to the Executive Committee, who shall in turn submit them to the International Council.

11.4. 수입과 지출의 기록, 재정과 관련한 본 조직의 지위는 국제 코디네이터에 의해 반 년마다 준비되며 집행위에 제출되어야 하고 집행위는 이를 국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11.5. All accounts of StreetNet shall be audited annually by a person/company registered as an accountant and auditor in terms of the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ppoint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True copies of the consolidated audited accounts of StreetNet together with the auditor's report shall be made available to members of StreetNet.

11.5. 본 조직의 모든 계좌는 관련 국가/국제 법에 의거 회계원, 회계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국제회의에서 임명한 개인/회사에게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받은 본 조직의 계좌의 복사물과 감사 보고서는 본 조직 회원들이 언제든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11.6. The consolidate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balance sheets and auditor's reports for StreetNet shall be con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and presented to member organisations.

11.6. 본 조직에 대한 감사받은 재정적 진술, 수입/지출 내역, 감사 보고서가 국제회의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회원단체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1.7. The auditor's report contemplated in Clauses 11.4 and 11.5 above

shall state whether:

11.7. 위의 조항 11.4와 11.5에 서술된 감사 보고서는 다음을 기술해야 한다.:

(i) she/he has satisfied herself/himself of the existence of the securities and has examined the books of account and records of StreetNet;

(i) 그/녀가 the existence of the securities에 만족했는지와 본 조직의 계좌 및 기록된 사항 장부를 검사했는지;

(ii) proper books of accounts have been kept;

(ii) 적절한 계좌 장부가 보관되었는지;

(iii) she/he has obtained all the information and explanation required;

(iii) 그/녀가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설명을 받았는지;

(iv) in her/his opinion the statement of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balance sheet audited by her/him have been properly drawn up so as to exhibit a true and correct reflection of the state of affairs of StreetNet according to the best of her/his knowledge and according to the explanations given to her/him and as shown by the books of StreetNet as at the date of the balance sheet;

(iv) 그/녀가 보았을 때, 그/녀가 감사한 수입과 수출, 이에 상응하는 서류에 대한 진술들이 그/녀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주어진 설명에 근거했을 때, 본 조직의 장부를 통해 제출된 날짜와 부합할 때 적절하게 본 조직의 활동 내역을 실제 올바르게 반영하는지;

(v) in her/his opinio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StreetNet in so far as they relate to financial affairs, have been complied with.

(v) 그녀가 보았을 때, 본 조직의 규약관련 조항들이 재정업무에 한해 언급했을 때 이행되었는지;

11.8. A member organisation which resigns or is expelled from StreetNet shall have no claim on the funds of StreetNet.

11.8. 본 조직을 탈퇴하거나 본 조직에서 제명된 회원 단체는 본 조직의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권한도 없다.

12.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12. 규약의 해석

12.1.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of this Constitution or any matter arising in connection therewith shall be vested in the International Congress, and it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provided that between International Congresses the International Council shall be empowered to make an interim ruling subject to a final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Congress.

12.1. 규약의 조항들 혹은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의 책임은 국제대회에 주어지며 이 결정은 국제대회들 사이에 국제회의가 국제대회의 최종 결정을 국제회의가 해당 기간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게 된다.

12.2. In the event of any difference of meaning between different versions of this Constitution,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12.2. 본 규약의 각 버전(역자 주: 각 언어로 번역한 버전)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권을 갖는다.

13. AMENDMENTS

13. 개정

The International Congress may repeal, amend or add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by a two-thirds (2/3) majority provided that at least sixty (60) days' notice of any proposed alteration shall have first been given to members by notice.

국제대회는 예정된 변경안에 대해 적어도 회원들에게 60일간의 고시가 있을 경우 한해 2/3 이상의 의견에 의거 본 규약 관련조항에 대해 폐기, 수정 혹은 추가할 수 있다.

14. INDEMNIFICATION OF OFFICE-BEARERS, COUNCIL MEMBERS AND EMPLOYEES

14. 실무자, 국제회의 임원과 고용된 사람에 대한 보상

The office-bearers, Council members and employees of StreetNet, provided that they have acted in good faith in a manner which furthers the interests of Streetnet, shall be indemnified by StreetNet against all proceedings,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reason of any omission, negligence or other act done in performance of their duties on behalf of StreetNet or its members, and they shall not be personally liable for

any of the liabilities of StreetNet or any of its members.

본 조직의 실무자, 국제회의 임원, 고용된 사람들은 본 조직의 이해를 진척시키는데 모범적으로 활동했다는 전제 하에 본 조직 혹은 회원들을 대표하는 활동 도중 발생한 누락, 부주의, 혹은 그 외 사항들로 인한 모든 활동, 경비, 비용에 대해 본 조직에 의해 면책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본 조직 혹은 회원들의 어떠한 부채에 대해서도 이를 갚을 책임이 없다.

15. DISSOLUTION

15. 해소

15.1. StreetNet may be dissolved at any time by resolution carried by two-thirds (2/3) majority of a International Congress or (only in extreme situations) by resolution carried by two-thirds (2/3) majorit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if for any reason StreetNet is unable to continue functioning, provided that no such resolution shall be taken unless a (postal and/or electronic) ballot of members of StreetNet shall have been conducted and more than sixty per cent (60%) of the members in good standing and participating in the ballot so approve.

15.1. 본 조직은 본 조직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고 본 조직의 회원들이 (우편 혹은 전자)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고 60퍼센트 이상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나 투표에 참석하지 못할 시 국제회의 2/3이상의 동의 혹은 (오직 최악의 상황에서) 국제회의 2/3이상의 동의에 의거 해산할 수 있다.

15.2. If a resolution for the dissolution of StreetNet has been passed as provided for in Clause 15.1 abov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15.2. 만약 본 조직의 해산과 관련한 결정이 위의 조항 15.1에 의거 통과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a) The available members of the last appointed International Council of StreetNet shall appoint a liquidator to carry out the dissolution. The liquidator shall not be a member of StreetNet and shall be paid such fees as may be agreed upon between her/him and the aforementioned available members.

(a) 본 조직의 마지막 동의된 국제회의의 임원들이 해산을 수행하기 위한 청산자를 선출할 것이다. 이 청산자는 본 조직의 회원이 아니어야 하며 그/녀와 전술한 임원들이 동의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

(b) The liquidator so appointed shall call upon the last office-bearers and officials of StreetNet to deliver to her/him the books of account, showing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StreetNet together with the register of members showing for twelve (12) months prior to date as from which StreetNet was unable to continue functio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te of dissolution, the fees paid by each member as at date of dissolution. The liquidator shall also call upon the said office-bearers and employees of StreetNet to hand her/him all unexpended funds of StreetNet and to deliver to her/him the assets of StreetNet and the documents necessary in order to liquidate the assets of StreetNet.

(b) 이렇게 선출된 청산자는 마지막 실무자들과 본조직의 임원들을 만나 그/녀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본 조직의 자산과 채무를 보여주고, 본조직이 할

등을 계속할 수 없기(아래에서 '해산 날'로 언급되는) 12개월 전 회원명부와 함께 해산 날까지 각 회원들이 낸 회비들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청산자는 언급한 본 조직의 실무자와 고용된 사람들을 불러 그/녀에게 지출되지 않은 본 조직의 기금을 돌려주고 자산 및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하게 해야 한다.

- (c) The liquidator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liquidate StreetNet's debts from its unexpended funds and any other monies realised from StreetNet's assets.
- (c) 청산자는 본 조직의 채무를 지출되지 않은 기금과 본 조직 자산들을 현실화한 다른 돈들로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d) After the payment of all debts in accordance with Clause 15.2(c) above, the remaining funds, if any, shall be disposed of by transfer of all or part of the assets to any other named organisation with similar aims and objectives, or to be kept in trust until such time as another organisation is established embracing all or part of the area and scope of the one dissolved and open to all organisations working in such area and scope.
- (d) 위의 조항 15.2에 따라 채무를 지불한 이후, 나머지 기금(있다면)은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갖는 단체로 배치되거나 이러한 다른 단체들이 세워질 때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이로써 해산된 단체의 영역과 범위를 아울러 해당 영역과 범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들에게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노점상 정책토론회



“만국의 노점상이여
단결하라”

| 약 10여개 국가의 노점상 관련 사례 발표

| 3월 18일 정책토론회 녹취록

| 한국노점상 현안 토론

노점상정책 토론회(Policy Dialogue)

일시 : 2004년 3월 18일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서기 : 1인 또는 녹취와 영상촬영하는 방법으로 대체

사회 : 국제노점상연합

- 10:00 : 개회
 - 국제노점상연합 의장 인사 겸 발언(5분)
 - 전노련 의장단 인사 겸 발언(3분, 3분)
- 10:20-12:00 : 각 국가별 사례발표(일종의 주제발표 성격)
 - 약 10여개 국가의 노점상 관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한다.
 - 각각의 사례를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한다.
 - 한국의 사례는 제외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4:30 : 토론
 - 사회 : WIEGO Sharit Bohwmik
 - 민주노총 허영구 전 부위원장
 - 서울시의원 심재욱 위원
 - 전국노점상연합 최인기 사무처장
 -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 청중 의견

- 14:30-15:00 : 토론정리
 - 감사의 인사 및 폐회
- 16:00-16:30 : 단체별 간담회 및 개별 인터뷰
- 10:20-12:00 : 각 국가별 사례발표(일종의 주제발표 성격)
 - 약 10여개 국가의 노점상 관련 사례 발표

◆ ◆ ◆ ◆ ◆

약 10여개 국가의 노점상 관련 사례 발표

□ 모잠비크

• 노점상이 없다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 페루 FEDEVAL

- 기본적인 문제: 실업, 빈곤
- 노점상은 빈곤해결에 있어서 핵심.
- 리마 시에 전체 경제의 40%가 집중되어 있음. 산업파괴 등의 문제가 있고 서비스, 먹거리 지역에서 빈곤문제 심각해지고 있음.
- 리마의 여성노점상들을 개발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거대 자본, 거대 유통상가가 리마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점상들은 시내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생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 남아공 이스트 케이프 동맹

• 남아공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

하다.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통해 개선 방향 모색. 재산손실, 가압류, 기타 탄압상황 발생하고 있음.

- 이스트 케이프 동맹의 경우 시에 압력을 가해 재정지원 받아냄.

□ 잠비아

-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계층 다수.
- 비공식부문을 범죄화하고 있음. 노점상 강제연행 등 탄압 일상화.
- 경제의 60%를 비공식부문이 담당. 사회복지서비스 못받음.
- 정부에 비공식부문 전담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남아공, 인도의 정책을 참고로 하고 있음. 회원들의 회비로 시장 설립. 조합형식으로 회원들이 기여함으로써 의지와 책임 강조.

□ 기니

- 기니 최초의 노점연합, 비정규직 대표가 국제대회에 참가함.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기니경제에 기여하고 있음. 스트리트 넷에 가입 직전 비정규직이 5,000여 명이었으나 가입 직후 6,500여 명으로 증가. 기타 직종 다수 포함.
- 회원들에게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 회원들의 권리의식 증진으로 세금납부 거부를 하여 정부와 협상 이뤄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조직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케냐

- 전체 중 70%가 비공식부문. 비공식부문 중 노점상이 70%.
- 정부의 정책마련 없음. 1930년대에 도입된 식민정책 유지.
- 지난 10년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화하였으며, 노점은 포화상태.

-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 상당수가 여성. 성폭력문제 심각. 맞아 죽는 일 발생. 임신부가 배를 맞아 사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중. 노점상단체 시연합 만들. 7개 도시에서 세부 규칙 만들. 나로비 대학 연구소에서 도움을 얻고 있음. 정책 세미나에 장관 등 참여시켜 협상력을 배가시키고, 정부에 압력을 가함. 집회도 많이 함. 대학에서 진행되는 시위 등 연대시위 진행.

□ 가나

- 인구의 80%.
- 아래로부터 조직화 진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노점상 정책이 시의회에 반영되는 단계.

□ 인도 (NASVI 회원 15만명. SEWA 70만명.)

- SEWA: 어떤 한 도시 회원 10만명. 노점상 수에 반해 국가정책 존재하지 않음. 가족단위 등록을 위한 캠페인 벌이고 있음. 전국조직을 위해 활동(NASVI 조직함).
- 첫 투쟁을 상업지역에서 시작함. 경찰폭력 심했음. 첫 법적 투쟁시작으로 허가제를 쟁취하여 시장 내에서 노점자리 얻음.
-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문제(비밀리에 고발, 과도한 벌금 부과) 있음.
- 재판을 통해 저항할 경우 벌금 더 높임.
- 벨라지오 선언문 발의. 벨라지오 선언 후 국가정책 만들어짐.
- 벌금에 대해 SEWA은행에서 저이자로 대출해줌.
- NASVI: 현재 천만 명이 노점을 통해 생계유지. 도시경제에서의 비율로 보면 엄청난 숫자. 경제에 크게 기여. 시에서는 노점상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 허가제이나 이들을 범죄화하고 있고, 각종 법률을 악용하여 노점상 탄

압. 재판 결과가 긍정적이더라도 시행안됨.

- 대규모 네트워크 형성(20개 주, 400개 조직, 법인, 허가제)
- 모든 이해당사자가 장관이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



3월 18일 정책토론회 녹취록

1. 각국 상황 보고

□ 케냐

(... 중간부분이 잘린 듯 아래 부분부터 녹음되어 있었음)

-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죽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두 명의 노점상이 단속과정에서 죽었습니다.
- 한명은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 또 한명은 임신 중이었는데 배를 발로 맞아서 나중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졌습니다.
- 2003년 6월에도 단속이 있었는데 공격이 있었고, 저는 철거를 당했습니다. 손도 부러졌구요.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 우리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는 않죠.
-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자신들의 결정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단속, 탄압이 있는 거죠. 2003년 의회예산을 보면 철거당한 노점상들을 위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긴 합니다. 뭘바타라는 곳에

서는 일부에서는 보상을 받았지만, 그들의 재산은 다 파괴당했습니다.

- 케냐에서는 실제로 법에 의하면 노점상들이 재산파괴나, 부상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법적절차가 복잡한데다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하기가 넘 힘들죠. 고소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는 그런대로 판결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가 상인들을 모두 도로에서 다 철거한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시의회의 그 행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는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관련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같이 모두 앉아서 정해야겠죠.

- 대화가 만약 안 되면 시는 단속을 합니다. 우리는 투쟁을 합니다. 그들의 맞선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걸 얻기도 했습니다.

- 노점상들의 단체의 경우 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도시와도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지역에서 나름대로 세부규칙을 만들거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나루비에 있는 대학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조직하려 할 때 세미나라든가 등등 제출을 하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을 일치시키고 우리의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

- 특정지역에서의 단속을 받으면 우리는 시위를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연대시위를 조직합니다. 대학에서도 진행되는 시위도 있습니다.

- 국제노점상연합이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도 단속이 있었을 때 우리는 법무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어떤 단속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면 케냐의 노점상이 그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페루에서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인도, 남아공에서는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모든 노점상 단체들이 함께 지지하고 지원을 함께 할 것입니다.

□ 모잠비크

- 각국의 노점상들이 처한 처지는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참여한 것은 국제 노점상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국대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노점상단체는 1992년에 시작됐으며 경찰한테 정부한테 공격 및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모잠비크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관찰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노점상들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없다면 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노점상 협회들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허락한다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 케냐 만세, 모잠비크 만세, 남아공 만세, 한국 만세, 인도 만세, 페루 만세

□ 페루

- 페루에서는 실업, 가난, 빈곤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점상들은 비공식적인 직업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화 직업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빈곤문제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비공식적인 직업 부문의 상황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고, 도심지역에서의 빈곤, 현지의 상황, 직업의 유동성이나 실직에 대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페루 전체 경제의 40%가 리마에 집중되어 있는데, 산업이 파괴되고 직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빈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노점상 조직들도 점점 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거리 상인들 중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고, 음식을 팔고 있는 노점상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권리와 모임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합니다.
- 리마에서의 집중해야 할 것은 노점상들이 집중을 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여성 노점상들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까? 문제는 정부권력이나 경찰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 커다란 외국 자본들이 리마의 산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외곽으로 몰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이렇게 시 외곽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직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으로 더욱 더 심한 빈곤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국제노점상연합을 통해 힘을 모아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 해야 합니다.

□ 남아공

- 남아공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남아공 민족회의가 이끄는 정부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단속이라든가 재산가압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통해 계속 저항한다면 남아공 정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한 단체의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하고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는 선거가 또 다음 달 있기 때문에 투표를 결집한 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노점상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남아공은 여전히 불 눈이 있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단결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점상 현안 토론

발제 1 노점상조직을 총연맹 차원에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허영구 민주노총 전부위원장

한국경제는 세계10위권에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초국적 자본의 경제지배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2200만 명이며 이중에 1500만 명이 임금노동자이며,

이중 65%가 비정규직이며 정규직임금의 51%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며, 남성노동자임금의 60%를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500만 명 중에 10%를 조직하고 있다.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노점상은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노점상의 46%가 IMF 이후에 출현했고 평균 나이는 47.2세라는 연구가 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자에서 노점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비중이 37.7%나 된다.

3.15~19일까지 국제노점상 서울대회가 열렸다. 세계에서 20여 나라의 노점상 대표들이 모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김홍현의장이 국제노점상연합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이다. 3.18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각국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 가나 : 가나 노점상연합은 10개 지역에 6000여명의 회원 있음. 전체노동인구의 80%가 비공식 부문임. 노총, NG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노점상이 사회에 기여하는 점을 부각시킴. 정부정책 참여에 노력 중.

□ 인도 : 인도의 노점상은 1000만 추정. 대표적으로 <세와>라는 조직은 70만 회원임. 노점상의 도시경제 비율 높으나 도시계획으로 공간을 줄이고 있음. 전국20개 주 400여 개 조직이 네트 워크화.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노점 불법화 구속을 각오한 투쟁을 통해 허가 얻어냄. 벨라지오

선언에 따른 국가정책 참여, 합법화, 공간확보권리 위해 노력.

□ **모잠비크** : 비공식 부문 85%, 그 중 50%가 노점상, 비정규직과 실업 증가. 비정규직, 노점상, 여성, 어린이 권리 위해 투쟁. 세금면제 투쟁.

□ **잠비아** : 자유시장 경쟁원리 도입 80% 사유화. 세계화는 실업과 비공식 부문확대. 1200만 명 중 500~600만 명이 비공식 부문. 계속 증가. 인구의 85%가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계 유지. 노점은 경제에 기여도 높음. 그러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 혜택받지 못함.

□ **페루** : 실업, 가난, 빈곤의 사회문제. 노점상이 빈곤의 핵심문제. 전체경제의 40% 차지. 여성들은 밤늦게까지 일함. 정부나 경찰의 부당함에 항거. 그러나 노점상은 시내 외곽으로 밀려남.

□ **한국** : 2001년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80%가 1일 평균 3~4만원 소득. 전국적으로 2000여 개 노점단속 용역업체 성행.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음반법, 시장법, 고물영업법, 주차법, 공무집행방해법,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노점상을 범죄시키고 있음.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대적 노점 단속.

국제적으로 노점상(street vendors)의 실태는 거의 비슷하다. 이번의 서울대회는 노점상을 비롯하여 비공식 부문 노동자 투쟁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연대를 다지는 계기였다. 특히 한국 노점상의 인권상황과 생존권 위협에 대해 알렸다.

노점상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인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대회가 열리는 중 인 3.18 노점상조직의 지도자인 이필두 공동의장을 연행하였다. 청계천 공사

로 노점상들은 서울운동장으로 밀려났다. 2년 후면 그곳도 철거 예정이다.

이번 서울대회는 1995년의 노점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벨라지오 선언을 확인하면서 첫 국제대회를 성사시켰다.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의 실상을 알려내고 노점상, 빈민, 비공식 부문 노동자운동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금 국제적으로 노점상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고 많은 권리를 확보하였다. 한국정부나 지자체가 노점상들에게 적대적인 태도 반해 많은 나라에서 대화를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2002년 인도 대회에서 '비하르주'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와 함께 토론을 벌였으며 남아공의 더반시의 시장은 "노점상은 불법이 아니며, 빈곤해결의 주요 열쇠"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자주적 단결권과 행동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언제든지 비정규직 노동자에서조차 밀려나 실업자로 존재하거나 노점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점상들도 분명한 노동자이므로 노동운동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자주적 단결권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을 비롯한 제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노점상은 노총에 가입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연대를 하고 있다. 브라질 노총(CUT)에 한국의 전농에 해당하는 소농조직이 특별위원회로 가입되어 있듯이 노동조합은 형식(뿌피부르주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노동자집단을 껴안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